

2023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

일반편입
학사편입
농·어촌
기초생활및차상위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재외국민

송실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① 교육이념(건학이념)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와 봉사**를 교육이념으로 한다.

② 교육목적

기독교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쳐 **인류의 번영과 국가·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적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수정사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원서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교는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설립된 대학으로,
건학이념에 따라 모든 학생은 소정의 기독교 과목과 채플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CONTENTS

■ 전형 일정	1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 지원 자격	4
■ 전형방법	15
■ 필답고사 안내	16
■ 선발기준	17
■ 동점자 처리 기준	17
■ 제출 서류	18
■ 서류제출 방법 및 도착확인 방법	24
■ 지원자 유의사항	25
■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안내	27
■ (총원)합격자 발표 및 미등록자 총원	29
■ 등록 안내	30
■ 등록금 환불 안내	31
■ 학기 및 학점	31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32
■ 안내부서 및 전화번호	33
■ 교내건물 배치도	34
■ 교통안내	35
【붙임1】 농어촌 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유형 1	36
【붙임2】 농어촌 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유형 2	37
【붙임3】 지원자 종합기록표 작성 시 유의사항(재외국민)	38
【붙임4】 지원자 종합기록표(재외국민)[예시 참고하여 작성바람]	39
【붙임5】 외국학교 조사표(재외국민)	41
【붙임6】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재외국민)	42
【붙임7】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재외국민)	43
【붙임8】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재외국민)	44
【붙임9】 학사학위(4년제) 과정 간호와 지정('12~'22학년도) 전문대학 현황	45
【붙임10】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명단	46
【붙임11】 아포스티유 협약, 발급기관 및 가입국 안내	47
【붙임12】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 본교 양식(해당자)	48





전형 일정

구 분	전형일정		안 내	
원서접수	2022.12.12.(월) 10:00 ~ 12.14.(수)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 인터넷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수험생 유의사항 공지 (고사장 안내)	2023.01.03.(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공지사항에서 수험생 유의사항(고사장 안내 포함) 반드시 확인 	
필답고사일	인문계열, 경상계열,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2023.01.06. (금)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사장: 본교 지정 고사실 • 준비물: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필기구(사인펜,볼펜) 필수 • 전형료 환불 불가: 지각자,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타 대학교와 고사일 중복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원서접수 바람 	
	자연계열(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제외)	2023.01.06. (금) 13:30		
[일반·학사편입 지원자] 1단계(11배수)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안내사항 공지 [재외국민전형 지원자] 1단계(5배수)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안내사항 공지	2023.01.10.(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 일반·학사 편입은 1단계 합격자(11배수)에 한하여 서류 제출 • 재외국민 1단계 합격자(5배수)는 제출할 서류 [p.21~22 참조]를 완비해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우편 제출 ※ p.21~22: 재외국민 서류 제출 목록 ※ p.23: 재외국민 서류 제출 및 수험생 유의사항 참조 • 1단계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 1단계 합격자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1단계 합격자의 학력 및 자격관련 서류제출 기간	2023.01.10.(화) 10:00 ~ 01.12.(목)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 우편(택배) 제출 •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마감일자 등기 우편 소인 유효] • 등기 우편 수신처: (우: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신양관 1층 입학관리팀 편입학 담당자 앞 	
서류도착 확인	발송 후 2~3일 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 서류 미제출 시 전형에서 제외되므로 원서접수 대행사에서 서류도착 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개별통보하지 않음) 	
최초 합격자	발표	2023.02.13.(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최초 합격자 안내사항 필독] • 자세한 등록시간 등 세부사항은 향후 합격자 안내사항에 명시 예정 •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등록기간 중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서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 제출하고 등록 또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 등록함 [필히 등록 확인할 것,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는 차수별 조회 기간 외에는 출력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할 것] • 자세한 등록절차 및 등록금액은 합격자 발표 이후 공지되는 최초 합격자 안내사항을 참고 바람 	
	등록	2023.02.13.(월) 09:30 ~ 02.14.(화) 16:00		
총원 합격자	1차	발표	2023.02.15.(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자는 본 모집요강 [p.29~30 참조]
		등록	2023.02.15.(수) 09:30~16:00	
	2차	발표	2023.02.16.(목) 10:00	
		등록	2023.02.16.(목) 09:30~16:00	
	3차 (최종)	발표	2023.02.16.(목) 21:00까지 [개별 전화 통보]	
등록마감		2023.02.17.(금) 09:30~16:00		

※ 위의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공지사항에 게시하니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1/2)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일반	학사	농·어촌	기초생활 및 차상위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성화 고졸 재직자	재외 국민
인문 계열	인문대학	기독교학과		1					
		국어국문학과	1	1					1
		영어영문학과	1	1	1				
		독어독문학과		1					
		불어불문학과	1	1					
		중어중문학과	1	1					
		일어일문학과	1	1					
		철학과		1	1				
		사학과	1	1					
		예술창작학부(문예창작전공)		1					
		예술창작학부(영화예술전공)							
	스포츠학부	생활체육전공 스포츠사이언스전공		1					1
	법과대학	법학과	1	1					
국제법무학과			1						
사회과학 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실천전공 사회복지정책·행정전공	1	1	1				
		행정학부	행정학전공 행정정보관리전공	2	1				
	정치외교학과	1	1					1	
	정보사회학과		1						
	언론홍보학과	1	1						
	평생교육학과	1	1	2					
경세통상 대학	경제학과	2	1		1				
	글로벌통상학과	1	1						
	금융경제학과							3	
	국제무역학과							2	
경상 계열	경영학부	HR & Marketing전공 OM & MIS전공 Financial Management전공	2	3					
		회계학과	1	1					
		벤처중소기업학과	1	1					
	금융학부	디지털금융전공 글로벌금융전공	1	1					
		계	21	27	5	1	0	5	3

※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지원자의 입시 성적이 저조하여 수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은 선발하지 않음

※ 금융경제학과(02-828-7343), 국제무역학과(02-820-0543)는 평일 야간과 주말에 수업을 진행함

- 본교는 야간과정이 없으며, 일부 개설과목이 야간에 개설될 수 있음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2/2)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일반	학사	농·어촌	기초생활 및 차상위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성화 고졸 재직자	재외 국민	
자연 계열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1	1						
		물리학과	1	1	1					
		화학과	1	1	1				2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1	1						
		의생명시스템학부	생명정보학전공 생명공학전공	1	1	1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2	2						
		신소재공학과	2	2		1				
		전기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계측정보처리전공	2	2					
		기계공학부	2	2		2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1	2		1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1	1					
			실내건축전공	1	1					
	IT대학	컴퓨터학부	시스템소프트웨어전공 융합소프트웨어전공	1	1	1		2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2	2					
			IT융합전공	2	2	2				
		글로벌미디어학부	미디어공학전공 콘텐츠공학전공	1	2	2				
			미디어경영학과						4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1	1	1				
		SI융합학부	5	1						
	계			27	26	9	4	2	4	2

※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으로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학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고 있으며, 해당 학과(부) 입학자는 의무적으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지원자의 입시 성적이 저조하여 수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은 선발하지 않음

※ 미디어경영학과(02-820-0910)는 평일 야간과 주말에 수업을 진행함
- 본교는 야간과정 없이, 일부 개설과목이 야간에 개설될 수 있음

※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는 '신소재공학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됨



지원 자격

- 모든 전형은 3학년 편입학임
- 모집단위 선택 시 전적 대학의 계열 및 학과(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본교(숭실대학교) 재학생 및 재적생(졸업예정자 포함)은 지원할 수 없음
- 일반편입은 농어촌, 기초생활및차상위,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재외국민 포함

1. 일반편입학

(일반편입, 농·어촌, 기초생활및차상위,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재외국민)

구분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
4년제 정규대학	국내	• 대학(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 (2023년 2월 수료 예정인 자 포함)
	국외	• 외국 대학 출신자(우리나라 4년제 대학 기준)는 출신 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의 1/2 이상을 수료한 경우에만 2학년 수료로 인정 • 졸업예정자는 2023년 3월 1일 이전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 • 영국 학제의 3년제 대학의 경우 졸업학점의 2/3 이상 수료한 사람
전문대학	국내·외	• 전문대학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84개 전문대학 간호학과 [붙임 9]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
학점은행제	학사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 중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사람
	전문학사	•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및 2023년 2월 취득 예정인 사람 •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전문학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 학사편입학

학사편입학 구분		학사편입학 지원 자격
4년제 정규대학	국내·외	•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2023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
학점은행제	학사·독학사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점 취득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 2023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

3.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

■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유형1 (6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동안 **부·모·학생(본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유형2 (12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한 자

- ※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 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 단, 추후 법령 등의 변경으로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따름

농·어촌 전형 지원자격 유의사항

1. 초·중·고등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가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인정함
2. 졸업일이전에 행정구역상 읍·면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지원자격 미달 불합격 처리함
3.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거주 인정기간(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중 주민등록초본 상 수험생 및 부·모 중 1명이 단 하루라도 말소된 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 없음
4.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 또는 신고 말소된 경우, 당해 기간은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5.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를 부모로 보고,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를 부모로 봄(친권지정 관련 증명서 별도 제출)
6. 농어촌 자격 인정 기간 중 부·모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였어야 함
7. 입양자의 경우,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부모로 보고,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를 부모로 봄
8. 부정한 방법(위장전입, 주소 허위 이전)으로 지원하여 합격(입학)한 경우 기간에 관계 없이 합격(입학)을 취소함
9.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며(학업 중단 후 재입학 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10.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1. 초·중·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읍·면)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함
2.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읍·면이 동(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당해 동(洞)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제출서류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이 증빙되어야 함)
3.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여야 하되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4.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지원 자격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지원 자격

■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5.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지원 자격

■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로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종합고 포함)를 의미함
- ※ 마이스터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 제시된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학과만 지원 가능

1. 각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2.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하지 않았으나,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을 이수한 자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동일계열 인정 교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
컴퓨터학부	정보처리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전자계산기와, 컴퓨터구조과, 컴퓨터응용학과, 정보통신과, 전자통신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컴퓨터과	정보·통신교과	공업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교과, 상업(정보)에 관한 교과

※ 2개 이상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한 수험생은 최종 전공을 기준으로 기준학과 적용

6.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지원 자격

■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제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4.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업체 범위	재직기간 산정 기준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체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기간 중 재직 중이어야 함 • 2023.03.01. 기준으로 재직기간(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이 3년 이상(예정)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이라 함은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이 1,080일(30일×36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재직기간은 지원자격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의 졸업·이수 직전 학기(3학년 2학기)부터 산정함 •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 영세창업·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군 의무복무, 병역특례 경력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7-1.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1/7)

■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각 지원자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통학력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24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의 의미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연속적으로 학업을 이수한 경우를 의미하고, 국내와 외국 간에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최소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외국 검정고시(예 : 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및 홈스쿨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 또는 외국 교육부로부터 학력취득이 비인가 된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가 1개월이 낮은 국가(일본, 필리핀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순수외국인(부모 모두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은 본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음

지원자격	자격요건	학력요건
외국영주 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한 교포의 자녀 - 자격인정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취득한 영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영주권 취득 전·후 자격 인정 기준 기간 내에 국내 주민등록은 이민 말소가 되어야 함	<p>[외국 이수 학력 요건] 고등학교 과정 1개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기간을 중·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p> <p>※ 재학기간 관련 설명 : 재학기간 '1년' 이라 함은 해당국이 학기제인 경우 2개 학기, 3Term제 인 경우 3개 Term, Quarter제 인 경우 4개 Quarter 전부를 의미함</p>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재외국민 자녀 - 공무원 - 상사직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재외국민 자녀 - 외국 현지 자영업자 - 외국 현지법인 취업자 - 국외파견 교직원 - 국외 선교를 위해 파견된 자(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외국유학연수자(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본교가 제시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하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2/7)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국외근무자의 정의	역년(曆年, Calendar year)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의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재학기간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재학 인정기준으로만 적용, 재직기간 및 체류기간이 축소·변경되는 것은 아님)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의 1개 학년으로 함 -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정의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했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1. 국외근무 공무원의 범위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소속기관 내 인사발령 등 정식 해외 파견 근무(상근)의 경우만 국외근무 공무원의 범위로 인정하고, 해외연수(교육) 또는 휴직 후 해외취업 하는 경우는 국외근무 공무원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음

2. 국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의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다.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준한 국내법인의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라.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마.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등

※ 국내법인 소속으로서 외국법인과의 상호계약에 의하여 해당 외국법인으로 파견된 임직원도 인정하나, 현지채용 또는 개인이 투자하여 외국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국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3/7)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계속)

3.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가. 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나.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 제외)

4. 기타 재외국민(선교를 위해 파견된 자)의 인정 범위

다음의 국내 기독교 관련 기관에 가입된 교단 또는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자녀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ww.kncc.or.kr
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www.cck.or.kr
3	한국교회연합	www.ccik.kr
4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home.kaicam.org
5	한국교회총연합	www.ucck.org

※ 단, 위의 기관에 가입된 교단 또는 교회 중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에서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교단 및 교회는 제외

■ 지원자격 심사기준

1. 외국학교 인정기준

- 가.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국내 소재 교육부 학력인정 외국인 학교는 국외고가 아닌 국내고 이수로 간주함
 (국내 소재 학력미인정 외국인 학교 과정 이수는 국내 및 국외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나.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단,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 본교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여 입시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학생의 제3국 수학을 인정함(제3국 수학인정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다.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만을 인정(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대학 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등은 불인정)
- 라.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북한이탈주민 지원자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검정고시 학력인정 방법을 인정함)
- 마. 외국학교의 교육 연한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인 초·중·고·대학(6-3-3-4) 학제를 기준으로 함 6-3-3 학제가 아닌 학교(13학년제 학교 등)에서 수학한 경우 해당학교의 학제를 확인할 수 있는 커리큘럼 및 학사일정표 제출해야 함
 ※ 학사일정표에는 해당 외국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방학시작 및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슈어 등도 제출 가능(홈페이지 출력물 제출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가 상세히 표기되어 있어야 함)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4/7)

■ 지원자격 심사기준(계속)

- 바.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 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할 수 있음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외국학교 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 12학년제에서 13학년제로 또는 그 반대로 전학하여 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불법이나 편법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1개 학년에 한하여 이수한 학년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사.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간주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의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재학 인정기준으로만 적용, 재직기간 및 체류기간이 축소·변경되는 것은 아님)
- 아.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2. 외국근무 인정기준

- 가. 보호자의 외국근무가 종료되어 귀국할 때 자녀만 외국에 남아서 계속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는 인정하지 않음[지원자의 재외국민 인정기간은 보호자(부모)의 외국 근무·거주 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 예 : 지원자가 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 1년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자의 외국 근무가 종료되어 국내로 귀국하는 경우, 외국 고등학교의 최소 재학 기준인 1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특례입학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나. 외국근무 공무원, 상사직원의 경우, 국외로 파견되어 상근한 경우만 해당되며, 단순 유학, 교육·연수, 안식년, 출장 등의 목적으로 거주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국외근무 상사주재원의 경우, 해외지사 설치 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난 근무기간은 외국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다. 보호자의 외국근무 자격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하여 인정할 수 있음
(예 : 국외근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종료 후 국외 현지법인에 취업 할 경우 등)

3. 월반과 조기졸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ex) 전·편입학 시가 아닌 당시 연속적으로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성적우수로 인한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이수학기(12년 과정, 24개 학기)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4. 외국영주 교포 자녀 중 영주권이 없거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국가는 외국영주 교포 자녀로서의 지원 자격이 없음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5/7)

■ 지원자격 심사기준(계속)

5.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가.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나.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단, 중복학기로 대체 가능한 누락학기는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을 의미하며, *단순누락은 대체할 수 없음)

* 단순누락 : 질병, 휴학, 자퇴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결손, 전·편입시 월반으로 발생하는 결손 등

다.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약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 G10-1까지 국내교 이수 후, 3년 지원자격 충족을 위해 G10-1부터 국외교를 인위적으로 중복하여 재학하는 경우 등]

예시①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지원자격			A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②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지원자격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학기 G2-2 ~ G3-1 중 한 개 학기만 G4-2 ~ 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6/7)

■ 지원자격 심사기준(계속)

6. 외국학교 재학 및 국외 체류기간 기준표

재학형태	대 상	구 분	근무 기간	거주(영주) 기간	체류 기간	재학 기간
외국 중·고등학교 과정에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 ※ 고등학교 과정 1개년 이상 반드시 포함 ※ 연속 3년·비연속 3년 모두 인정	외국영주 교포 자녀	보호자	3년 이상	3년 이상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배우자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자녀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3년 이상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	보호자	3년 이상	3년 이상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배우자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자녀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3년 이상
	기타 재외국민 자녀	보호자	3년 이상	3년 이상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배우자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자녀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3년 이상

- 가. 외국 체류기간은 '출입국 사실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 나. 외국 체류기간은 통산 재학기간이 아닌 1개 학년 단위로 계산함
- 다. 보호자는 부모 중 외국 근무자를 의미함
- 라. 보호자(영주권자의 경우 부모)의 국외 근무·거주(영주)기간 내에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1년(2개 학기) 이상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마. 국외거주·체류기간은 각 지원자가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재학기간 증명서류(재학증명, 성적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함
- 바. 지원자의 국외재학기간은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일자의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 국외 근무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지원 자격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7.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지원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입시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한 서류는 불법이나 편법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지원자격 심사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음.**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7/7)

〈참고〉 외국학교 수학기간 인정 / 불인정 사례

1. 인정 사례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인정]													인정 (중복수학한 1학기 외국학교 수학학기로 인정)
외국학교									[인정]	[인정]	[인정]	[인정]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대학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인정]														인정 (12년 기준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수학 시 인정)
외국학교 (10학년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고1	고2	고3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인정]													인정 (13학년제 학교에서 이수한 9,10학년 → 8,9학년 이수로 인정)
외국학교 (13학년제)								◀◀	[인정]	[인정]				
외국학교 (12학년제)										[인정]	[인정]			

2. 불인정 사례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불인정 (월반 2개 학기 이상으로 23학기 미충족)
외국학교1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외국학교2							월 반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불인정 (미이수 학기 2회 이상)
외국학교1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외국학교2									[인정]	[인정]	[인정]	[인정]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불인정 [고등학교 과정 2개 학기(1년) 미만 이수]
외국학교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전형방법

- 일반, 학사, 농어촌, 기초생활맞차상위,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 최초 합격자를 포함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1배수까지 예비순위를 부여
 - 예비순위 범위 내에서 총원 합격자 선발
 - 지원 자격미달, 결시자, 서류미제출자 등은 제외
- 재외국민
 - 필답고사를 통해 최초 합격자를 포함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1단계 동점자 합격)한 후 서류평가를 거쳐 최초 합격자를 발표함
- 일반편입은 농어촌, 기초생활맞차상위,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재외국민 포함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가. 일반편입(농어촌, 기초생활맞차상위,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및 학사편입

계열구분	전형형태	필답고사		총점	서류평가
		영어	수학		
인문계열, 경상계열, 건축학부(실내건축전공)	1단계 (11배수)	100% (100점)	-	100% (100점)	-
	최종	-	-	-	PASS / FAIL
자연계열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제외)	1단계 (11배수)	50% (50점)	50% (50점)	100% (100점)	-
	최종	-	-	-	PASS / FAIL

※ 공과대학 건축학부(실내건축전공)은 영어 필답고사만 시행함

나. 재외국민

모집단위	전형형태	필답고사		총점	서류평가
		영어	수학		
국어국문학과, 스포츠학부, 정치외교학과	1단계 (5배수)	100% (100점)	-	100% (100점)	-
	최종	-	-	-	PASS / FAIL
화학과	1단계 (5배수)	50% (50점)	50% (50점)	100% (100점)	-
	최종	-	-	-	PASS / FAIL

다. 1단계 합격자 발표: 2023.01.10.(화) 10:00

- 1) 1단계 합격자는 서류 제출 기간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출 서류들을 모두 완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 완료해야 함(우편 제출)
 - ※ 도착분에 한함[마감일자 등기 우편 소인 유효]
 - ※ 등기우편: (우: 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신앙관 1층 입학관리팀 편입학 담당자 앞
- 2) 1단계 합격자 제출 서류 목록: p.18 ~ 20 참조
- 3) 재외국민 1단계 합격자 제출 서류 목록: p.21 ~ 22 참조
- 4) 재외국민 1단계 합격자 서류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p.23 참조



필답고사 안내

-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필답고사 수험생 유의사항(고사실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일반편입은 농어촌, 기초생활및차상위,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재외국민 포함

1. 필답고사

가. 대상: 일반편입(농어촌, 기초생활및차상위,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재외국민) 및 학사편입 지원자

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2023년 1월 3일(화) 10:00 예정

다. 고사일시

필답고사일시	인문계열, 경상계열, 건축학부(실내건축전공)	2023.01.06.(금) 09:30 (09:00까지 고사실 입실 완료)
	자연계열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제외)	2023.01.06.(금) 13:30 (13:00까지 고사실 입실 완료)

라. 장소: 본교 지정 장소[자세한 내용은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확인 필수]

마. 필답고사 방법

구 분	출제영역	출제형식	출제문항	고사시간
인문계열 경상계열 건축학부(실내건축전공)	영어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90분
자연계열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제외)	영어, 수학		50문항 (각각 25문항)	

※ 공과대학 건축학부 중 건축공학전공은 영어/수학 필답고사 시행, 실내건축전공은 영어 필답고사만 시행함

※ 문항에 따라 배점이 상이하므로 문제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바. 주요사항

- 1) 수험생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2023년 1월 3일(화) 10:00 공지 예정]에 게시되는 수험생 유의사항(고사장 안내 포함)을 확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2) 수험생은 입실 완료 시각까지 고사실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함, 고사 시작 후 절대 입실할 수 없음
- 3) 수험생은 고사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검은색 필기구(사인펜 또는 볼펜), 개인 물병 및 마스크 지참 바람(필기구는 본교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수험생 본인이 준비할 것)

※ 답안지 마킹 시 검은색 사인펜 또는 볼펜을 사용하여 마킹(연필, 샤프 사용 불가)

- 4) 자연계(수학 과목) 지원자에게는 연습지(B4용지 1매)를 제공하며, 고사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5) 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퇴실할 수 없으며, **중도퇴실자는 불합격** 처리함
- 6)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불합격 처리함
- 7) 과년도 편입학 필답고사 문제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참조 바람
※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입학전형안내] - [편입학] - [기출문제] 게시판
- 8)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코로나-19 방역**에도 적극 협조 바람



선발기준

1. 해당 학과(부) 지원자 중 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함
2.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함
3. 필답고사 결시자, 필답고사 '0'점, 부정행위자, 중도퇴실자, 서류미제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4. 합격자 중 미등록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시, 해당 학과(부) 예비순위자 중에서 성적 총점 순으로 총원함



동점자 처리 기준

계열구분	동점자 처리 순위
인문계열 경상계열 건축학부(실내건축전공)	① 영어 고 배점 문제 다 정답자 ② 전적대학 성적 우수자
자연계열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제외)	① 수학 성적 ② 수학 고 배점 문제 다 정답자 ③ 영어 고 배점 문제 다 정답자 ④ 전적대학 성적 우수자



제출 서류

-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제출서류는 서류제출일 기준(2023.01.10.~) 1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만 인정함
 - 2022.12.11. 이후 발행된 제출서류만 인정(단,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외국에서의 재학/근무/거주가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면 제출 가능)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원본 서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가 원본 및 사본을 모두 지참해 본교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입학처에서 원본과 사본을 대조한 후 원본을 반환함(사본을 제출한 후 최종 합격한 경우,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를 통해 서류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1. 전 학년 성적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일반편입 (농어촌, 기초생활및차상위,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재외국민 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점 평균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백분위 점수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독학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점자 발생 시 필요 • 전적 대학 수가 2개 이상일 경우(편입을 한 번 이상 한 경우) 최종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편입한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 대학에서 1개 학기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대학이 아닌 편입 전 대학의 증명서만 제출
학사편입		

2.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일반편입 (농어촌, 기초생활 및차상위,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재외국민 포함)	4년제 대학 출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소속 대학에서 수료(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증명서 발급부서의 담당자가 (재학, 휴학, 제적)증명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붙임12] 문서를 출력해 해당 증명서에 부착한 후 발급기관장의 직인을 날인 후 제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대학명</td><td></td></tr> <tr><td>소속 학과</td><td></td></tr> <tr><td>성명</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r> <tr><td>수료(예정) 학년</td><td></td></tr> <tr><td>2학년 수료(예정)학점/졸업학점</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수료예정일(서류발급예정일)</td><td></td></tr> <tr> <td rowspan="3">관련부서 및 담당자</td> <td>관련부서:</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발급 기관장 직인</td> </tr> <tr><td>성명:</td></tr> <tr><td>연락처:</td></tr> <tr><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위 학생은 본교 학칙에 의거 2학년 수료(예정)자로 인정함</td></tr> </table>	대학명		소속 학과		성명		생년월일		수료(예정) 학년		2학년 수료(예정)학점/졸업학점	/	수료예정일(서류발급예정일)		관련부서 및 담당자	관련부서:	발급 기관장 직인	성명:	연락처:	위 학생은 본교 학칙에 의거 2학년 수료(예정)자로 인정함		
	대학명																							
	소속 학과																							
성명																								
생년월일																								
수료(예정) 학년																								
2학년 수료(예정)학점/졸업학점	/																							
수료예정일(서류발급예정일)																								
관련부서 및 담당자	관련부서:	발급 기관장 직인																						
	성명:																							
	연락처:																							
위 학생은 본교 학칙에 의거 2학년 수료(예정)자로 인정함																								
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독학사 포함)	(전문)학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학사학위 과정 중인 학생은 70학점 이상의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며, 전문학사학위 과정 중인 자는 전문학사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제출] 																						
학사편입	4년제 대학	(학사학위과정)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독학사 포함)	학사학위수여(예정)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점취득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및 2023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3. 추가 서류(농어촌 전형 6년, 12년)

가. 유형 1(6년)

대상자	제출서류	안 내	
농·어촌 유형1(6년)	[1] 농·어촌 학생 지원자격확인서 유형1(6년) 1부 ※ [붙임 1]의 본교 양식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학생 지원자격확인서 유형1(6년) 1부 [붙임1] ※ 인터넷 접수 시 제공되는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하여 제출 ※ 출신교 학교장이 본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 편입학 지원 자격 및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발급 	
	[2]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사본(출신 중·고등학교장 직인 및 간인) 또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지원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수험생의 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지원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4] 부·모·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동안 주소지 전체가 기재되어 거주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 ※ 과거 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체류지변경사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경우 	해당자만 제출
	[6-1]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부 [6-2] 말소자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7-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7-2]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이혼한 경우 	
	[8-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8-2] 양육권판결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과 양육권이 상이한 경우 	
	[9] 입양관계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양자인 경우 	

나. 유형 2(12년)

대상자	제출서류	안 내
농·어촌 유형2(12년)	[1] 농어촌 학생 지원자격확인서 유형2(12년) 1부 ※ [붙임 2]의 본교 양식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학생 지원자격확인서 유형2(12년) 1부 [붙임2] ※ 인터넷 접수 시 제공되는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하여 제출 ※ 출신교 학교장이 본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학생 편입학 지원 자격 및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발급
	[2]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사본(출신 고등학교장 직인 및 간인) 또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
	[3]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동안 주소지 전체가 기재되어 거주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 ※ 과거 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추가 서류(기초생활및차상위)

가.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를 제출

(단, 차상위계층 관련 자격서류는 서류 제출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2023.01.03.(화) 이후]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구분		제출서류	안내	발급처	
자격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명의 발급	주민센터	
	차 상 위 계 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본인 명의 자격증명서(확인서)가 아닌 차상위가구의 학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에 따른 증명서 외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모든 자격증빙 서류는 서류 제출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2023.01.03.(화)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차상위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명의 발급		

5. 추가 서류(특성화고교졸업자)

가. 특성화고교졸업자

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특성화고교졸업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생부 사본(출신 고등학교장 직인 및 간인)

6. 추가 서류(특성화고졸재직자)

가. 특성화고졸재직자

대상자	제출서류	안 내		
특성화고졸 재직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생부 사본(출신 고등학교장 직인 및 간인) 또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	지원자 전체	
	산업체 재직자 (4대보험 가입자)	재직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초본 (해당자)	• 재직기간 명시, 현 직장에 한함 • 군 의무복무기간 포함 대상자(병역 사실 기재)	해당자
		4대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 확인서 1부	• 지원 자격 기간에 해당하는 산업체 모두 포함 • 아래 증명서 중 1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minwon.nhic.or.kr)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입자용)(발급처: www.nps.or.kr) 3.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처: total.kcomwel.or.kr) 4. 4대보험가입확인서 (발급처: www.4insure.or.kr)	지원자 전체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해당자
		납세증명서	•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 납부내역증명서(세무서 발행) • 휴업/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 해당자에 한함	
	1차산업 (농업·수산업) 종사자	공적증명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농지원부 등)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최종 합격자는 2023년 3월 1일 기준 재직 사실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최종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함) • 2023년 3월 1일 기준 재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의 취소함	최종 등록자

7-1. 추가 서류(재외국민) - 1단계 합격자에 한함 (1/2)

제출서류 명	외국영주 교포자녀	국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비 고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 재학]증명서 및 전 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생)	● (학생)	● (학생)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 대신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입, 전출일 명시) 제출
해외학교 학사일정표 (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 (학생)	● (학생)	● (학생)	해당 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외국근무(체류)기간 명시]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본사 인사권자 발행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 (수리서)] 사본 ※ 본사 또는 은행 원본대조필 날인		● (보호자)		상사직원만 제출 (필수, 미제출시 접수불가)
정부초청서 또는 추천서			● (보호자)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거주사실 확인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여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출입국 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영주권 사본	● (부,모,학생)			해외공관장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학생 기준으로 각각 1부씩 제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영주교포자녀만 해당)]	● (부,모,학생)			
지원자종합기록표[붙임4], 외국학교 조사표[붙임5], 외국학교 학력조회동의서[붙임6]	●	●	●	본교 소정양식
재직사실조회동의서[붙임7]		●		본교 소정양식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붙임8]	●	●	●	본교 소정양식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서류는 각 1부씩 제출(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
- ※ **외국학교 학사일정 또는 학제 관련 서류에는 해당 외국 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홈페이지 출력물(홈페이지 출력 시 웹사이트 주소 표기), 브로슈어 등 가능]
- ※ **상사직원의 경우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에 소속부서, 직위, 파견국가명, 파견기간이 함께 명시되어야 함**
- ※ 정부의 초청 및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는 정부기관 초청 또는 추천서를 첨부
- ※ 지원자 종합기록표[붙임4], 외국학교 조사표[붙임5],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붙임7]는 본교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 ※ 부모의 이혼사실이 있는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 ※ 지원자의 입양사실이 있을 경우 본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붙임8]은 최종 합격 후 등록자에 한하여 제출(부,모,학생)

7-2. 추가 서류(재외국민) - 1단계 합격자에 한함 (2/2)

제출서류 명	기타 재외국민				비 고
	외국유학 연수자의 자녀	선교파견 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취업자 자녀	현지 자영업자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 재학증명서 및 전 과정 성적증명서 / (각 1부)	● (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 대신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입, 전출일 명시) 제출
해외학교 학사일정표 (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 (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해당 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소속 기관장 추천서	● (보호자)				
①소속 당회장 추천서 ②선교파견사실확인서(파견기간 명시) ③선교사 파송기관 법인등록증 ④회원교단 소속증명서 (각 1부)		● (보호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한국교회연합 -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 한국교회총연합회 회원교단에 한함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외국근무(체류)기간 명시]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본사 인사권자 발행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보호자)	● (보호자)	
지원자격 기간의 보호자 세금납입 증명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입증명]			● (보호자)	● (보호자)	필수서류이며 미제출 시 접수 불가, ※ 납입 기간 기재 필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거주사실 확인서)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여권사본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출입국 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학생 기준으로 각각 1부씩 제출]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주민등록등본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부,모,학생 모두가 한 세대 안에 있는 경우 1부만 제출
지원자종합기록표[붙임4], 외국학교 조사표[붙임5], 외국학교 학력조회동의서[붙임6],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붙임8]	●	●	●	●	본교 소정양식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서류는 각 1부씩 제출(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
- ※ **외국학교 학사일정 또는 학제 관련 서류에는 해당 외국 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홈페이지 출력물(홈페이지 출력 시 웹사이트 주소 표기), 브로슈어 등 가능]
- ※ **세금납부 증빙서류에는 해당자의 성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세금납부 사실 증빙 서류가 없거나 면제자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해당국 법령 및 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현지법인 취업자 및 현지 자영업자의 경우 법인세 납부이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국 법령 또는 회사 대외비 등의 사유로 법인세 납부이력 제출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제출
- ※ 지원자 종합기록표[붙임4], 외국학교 조사표[붙임5],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붙임6]는 본교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 ※ 부모의 이혼사실이 있는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 ※ 지원자의 입양사실이 있을 경우 본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붙임8]은 최종 합격 후 등록자에 한하여 제출(부,모, 학생)

재외국민 전형 서류 제출 및 수험생 유의사항

가. 재외국민 전형 서류접수는 **1단계 필답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반드시 『우편접수』**를 시행함

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제출 시

1) 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단, [붙임 10]에 있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경우, 별도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불필요

2)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속한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됨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음)

나) 아포스티유협약, 발급기관 및 가입국 안내에 관하여서는 [붙임 11]를 확인하시기 바람

다.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 제출(제출서류는 서류접수일 현재 통상 3개월 이내에 발행, 단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외국에서의 재학/근무/거주가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면 제출 가능)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행기관 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거나, 서류 접수 시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원본대조 확인해드립니다

라. 학력 및 자격 관련 서류의 사본 제출자는 합격 후 반드시 **원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함**

마.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국내 학교 및 재외 한국 학교의 경우 성적, 재학 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함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사.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판장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아. 보호자의 자격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예 : 보호자가 국외 파견 상사직원으로 근무 후 현지법인에 취업하여 계속 지원자격을 이어갈 경우 두 가지 자격 기준에 요구되는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함)

자.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전형에 중요한 사항을 위·변조,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합격(입학)을 취소함

카. 합격자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발급기관에 조회하여 상이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합격(입학)을 취소함

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입학전형 평가 성적 및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지원자의 입시 성적이 저조하여 수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외국대학 출신자

제출서류명	일반편입학 지원자	학사편입학 지원자
1. 성적증명서	평점 평균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백분위 점수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동점자 발생 시 필요]	
2.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4년제 대학	• 대학(학사학위과정) 졸업(예정) 증명서
	전문대학	
3. 기타 제출서류	•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본 모집요강 별첨 양식 사용 [붙임6 -(*) 부분 본인 작성 후 제출])	

외국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제출 시
 - 가) 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나)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속한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됨
 - 1)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2)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 신청 할 수 있음
2.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발급기관 및 가입국 안내[붙임11]를 확인 바람



서류제출 방법 및 도착확인 방법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구 분	내 용
	제출서류는 2022.12.11. 이후 발행한 것만 인정 단,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전형료 반환 서류는 [2023.01.03.(화)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제출기간	2023년 1월 10일(화) 10:00 ~ 1월 12일(목) 17:00
제출방법 (등기우편 발송 권장)	▶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하단에 원서접수 시 부여된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 하고, 서류 발송 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에서 우편 발송용 봉투 표지 양식 출력 후 봉투에 부착 후 제출서류와 함께 송부 • 등기우편 : (우: 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신양관 1층 입학처 입학관리팀 편입학 담당자 앞
도착 확인 방법	서류 도착 여부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으므로 서류 발송 2~3일 후부터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admission.ssu.ac.kr) 또는 본인이 접수한 원서접수 대행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기한 내 서류 미제출은 결격자로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원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원본과 사본을 지참한 후 본교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원본대조한 후 반환함]



지원자 유의사항

-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변경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1. 세부 유의사항

- 본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입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원서접수 전형료 결제를 완료한 후에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신중히 작성(접수)하여야 함
- 원서접수 마감일 **2022년 12월 14일(수) 18:00**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니 사전에 접속하여 원서접수를 완료할 것
 ※ 원서접수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 진학사(www.jinhakapply.com)로 연락할 것
-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형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합격 처리함(전형료 반환 불가)
- 원서접수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전형 및 모집단위가 다른 경우, 원서접수 기준으로 모집단위를 적용함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 한 경우, 작성 오류, 기재 사항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사진은 필답고사 시 본인 여부 확인 및 최종 합격 후 학적 자료에 활용되므로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록해야 함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합격 여부는 전화로는 문의받지 않음(대화 중 착오 가능성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
- 입학전형에 사용된 서류 및 기재사항의 위·변조, 허위증명서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합격(입학)을 취소함
- 최종 합격(입학)한 후 본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합격(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3-나에 의하여 입학전형 평가 성적 및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입시 성적이 저조하여 수학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지원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학칙에 명시된 경우(입영, 질병)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1년 이내에는 휴학할 수 없음**
(기타 휴·복학과 관련된 문의는 본교 학사팀에 문의 요망 ☎02-820-0152)

- 필답고사 당일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수험생 안전과 원활한 고사 진행을 위해 **교내차량 진입이 통제** 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 요망(지하철 7호선 송실대입구역 3번 출구)
- 전형기간 중 연락처 수정은 수험생 본인이 직접 수정해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연락이 불가하여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연락처는 등록금 환불 신청 시 인증번호 수신이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기재할 것**)
- 일반 편입학 지원자 중 졸업예정자로서 합격한 자는 「졸업증명서」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인정 예정자로서 합격한 자는 「(전문)학사학위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를 **2023년 2월 21일(화) 17:00까지** [2023.02.21.(화) 등기 우편 소인 유효] 본교 입학처로 등기우편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합격(입학)을 취소함**]
- 학사편입학 지원자 중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학사학위 수여 예정자로서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2023년 2월 21일(화) 17:00까지**[2023.02.21.(화) 등기 우편 소인 유효] 「**졸업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수여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를 본교 입학처로 등기 우편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합격(입학)을 취소함**]

※ 개인 정보 자료 수집 활용 동의

입학원서 접수 시 입력한 정보는 입시 관련 업무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본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접수 시 입력한 정보를 입시와 관련된 업무 (SMS, ARS 업체, 입시 관련 유관기관 등) 및 본교 교육·연구·행정, 대학생활 및 정보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2. 기타 사항

가. 전형기간 중 **연락처 수정**은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연락이 불가하여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구 분	수정방법	비 고
원서접수 기간 2022.12.12.(월)~12.14.(수)	원서접수 대행사에서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수정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서 수정한 연락처는 본교 입학관리시스템에 반영되고 원서접수 업체에는 반영되지 않음
원서접수 마감 이후 변경 가능기간 2023.02.06.(월)~02.08.(수)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수정	

나. 본교 입시 업무를 현저히 방해한 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전형료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전형료에 포함)

전형료 결제(입금) 후에는 원서의 내용 수정이나 접수 취소 및 전형료 반환 등이 불가하므로, 전형료를 결제하기 전에 신중히 원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전형료를 결제하여야 함

전형구분	전형료	비고
일반편입 (농어촌, 기초생활및차상위,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포함)	70,000원	-
학사편입	70,000원	
일반편입(재외국민)	170,000원 (2단계 서류심사비 100,000원 포함)	원서 접수 시 일괄 결제



전형료 환불 안내

1. 전형료

원서접수 이후(전형료 결제 완료 후)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타 대학과의 고사 일자 중복, 단순 변심 등 본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2조의 3]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의 일부를 환불 할 수 있음)

구분	환불금액	비고
일반편입(재외국민) 1단계 불합격자	100,000원	1단계 불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서류심사비(100,000원)를 환불
대학의 귀책사유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를 제외한 전형료 전액	입학시스템 오류, 전형일자 사후 변경 등
고사 당일 천재지변 또는 질병		질병의 경우 해당사항을 입증할 증빙서류(입원확인서) 필요 ※ 코로나-19 확진의 경우 고사응시가 가능하므로 환불 대상이 아님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전형료 환불은 2023년 2월 중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계좌로 일괄 환불될 예정이므로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라며,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계좌의 오류로 인하여 환불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전형료 반환 대상자 및 제출서류 안내

- 지원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원서접수 시 반환 대상자임을 선택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기간 내[2023.01.10.(화) ~ 01.12.(목)]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를 제외한 전형료 전액 환불이 이루어 짐(2023년 2월 중 환불 예정임)

대상자		제출서류	안 내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처 발급(지원자 본인 명의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주민센터 발급(지원자 본인 명의 발급)
차 상 위 계 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상위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 주민센터 발급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주민센터 발급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구 우선돌봄 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주민센터 발급
※ 본인 명의 자격 증명서(확인서)가 아닌 차상위 가구의 학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에 따른 증명서 외 가족 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격 증빙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2023.01.03.(화)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주민센터 발급 (지원자 본인 명의 발급)

※ 증빙서류 제출기간[2023.01.10.(화)~01.12.(목) 마감일자 소인유효] 엄수바라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환불하지 않음

※ 전형료 반환 관련 자격서류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2023.01.03.(화) 이후] 발급 서류이어야 함

2. 입학전형료 잔액 환불

- 가.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을 2023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나. 입학 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가급적 환불계좌 이체를 권장함
 - 반환 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권장사항)
 - 본교 직접 방문
- 다.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여 반환함.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라. 전형료 잔액 환불 여부는 2023년 4월 중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 계좌의 오류로 인하여 환불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총원)합격자 발표 및 미등록자 총원

- 최초 합격자 및 총원 1차~2차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일반/학사 편입학은 최초 합격자를 포함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1배수까지 예비순위를 부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총원 합격자 선발(단, 지원자격미달, 결시자, 서류미제출자 등은 제외)
- 재외국민 편입은 최초 합격자를 포함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1. 최초 합격자 발표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조회)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 (조회)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최초합격자 발표일	발표방법	등록기간
2023.02.13.(월) 10:00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수험생 본인이 직접 확인)	2023.02.13.(월) 09:30 ~02.14.(화) 16:00

2. 총원 합격자 발표[수험생은 차수별로 반드시 합격자를 확인(조회)할 의무가 있음]

- 가. 총원 1차~2차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직접 확인(조회)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나. (최종) 총원 3차 합격자는 전화로 개별 통보하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조회)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총원 합격	차수	제1차	제2차	제3차 (최종)
	발표일시	2023.02.15.(수) 09:00	2023.02.16.(목) 09:00	2023.02.16.(목) 21:00까지 [개별 전화 통보]
등록일시	2023.02.15.(수) 09:30~16:00	2023.02.16.(목) 09:30~16:00	2023.02.17.(금) 09:30~16:00	
발표 방법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서 수험생 본인이 직접 조회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발표 전날 오후부터 전화로 개별 통보	

- ※ 총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반드시 미등록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함
- ※ 총원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 ※ (최종) 총원 3차 합격자의 경우 홈페이지 발표일 전날 오후부터 전화로 '개별 통보(통보 시작 및 종료는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제목으로 안내)하며 등록 의사가 있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합격자로 발표함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사후법적 조치 및 책임소재를 밝히는 증거물로 사용)
- ※ (최종) 총원 3차 합격자 전화 통보는 **2023년 2월 16일(목) 21:00까지 진행함**

3. 합격 통지서(합격증[각종 증빙 및 제출용 자료로 활용 시])

본교에서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함(**기간 이후에는 출력 및 재발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출력하여 보관하기 바람**)

- ※ 합격통지서는 각종 증빙 및 제출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등록 안내

- 합격자에 한해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를 통해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하지 않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 안내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불합격 처리됨.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1. 등록기간

구분	최초합격자	제1차 총원합격자	제2차 총원합격자	(최종)제3차 총원합격자
등록 기간	2023.02.13.(월) 09:30 ~ 02.14.(화) 16:00	2023.02.15.(수) 09:30~16:00	2023.02.16.(목) 09:30~16:00	2023.02.17.(금) 09:30~16:00

※ 최초 및 총원 차수별 등록 마감일 16:00 이후에는 등록을 받지 않으며, 등록 마감일 16:00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불합격 처리함(은행 창구 영업시간이 등록 마감시간과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 창구 영업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총원 합격자는 반드시 등록기간(등록시간 엄수)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및 시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2. 등록장소 및 금액

구분	등록장소	등록금액[입학금 및 기타납입금 포함]
최초 및 총원합격자	전국 지정은행	4,500,000원 ~ 6,000,000원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에 따라 상이하며, 확정된 등록금액은 '등록금 납입고지서' 참조]

3. 등록방법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등록기간 중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서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 제출하고 등록 또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등록함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해당 기간 외에는 출력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할 것)

4. 등록 확인 방법

등록금 납부 후 반드시 확인할 것!!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자세한 등록 절차, 등록금액, 등록 확인 방법 등은 추후에 공지되는 합격자 안내사항을 필독하기 바람

5. 학자금 대출관련 문의: 【장학팀 ☎ 02-820-0819】,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등록금 환불 안내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2.15.(수) 10:00~02.17.(금) 21:00까지 ※ 기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예정 ※ 학기 개시일 이후부터는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2항 관련)에 따름
환불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불신청 기간 내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 온라인 환불신청을 완료해야 함 ※ 환불(입금)은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하며, 전형이 종료된 후 일괄입금 처리하므로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바람 ※ 원서접수 시, 전형료 환불계좌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학기 및 학점

1. 본교 학기시작 : 2023년 3월 1일

2. 타 대학 인정학기 및 학점

인정학기	인정학점
4학기	수험생이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66학점」까지만 인정

※ 수업 연한은 인정 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4년(8학기)으로 함

※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및 교과 이수(채플 포함) 등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을 따름

※ 편입생은 학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학 즉시 휴학이 불가능함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본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1. 원서접수 기간: 2022년 12월 12일(월) 10:00 ~ 12월 14일(수) 18:00

2. 원서접수 절차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접속 후 '인터넷 원서접수' 클릭



회원가입 (반드시 수험생 본인 명의로 가입)
및 로그인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음)



'**숭실대학교**' 선택



모집요강 및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입학원서 작성 및 입력사항 확인
(300Kb 이하의 사진파일을 미리 준비하여 원서접수 시 등록:
모든 전형에 해당함)



전형료를 결제하여 접수 완료된 후에는 지원 모집
단위 등 입력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전형
료를 결제하기 전에 입력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단, 연락처 및 주소는 변경 가능함)



전형료 결제



수험표 출력
[수험표를 본인이 보관 후 필답고사 시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함]



전형료 결제를 완료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
으므로 반드시 결제를 완료해야 함
[전형료 납부(결제) 이후에는 전형료 환불 불가]



인터넷 원서접수대행사에서 우편발송용 봉투
표지양식 출력 후 제출서류 등기우편 발송



- 발송 표지는 본인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서류 제출 시 서류들을 넣은 봉투에 부착함
- 각 전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기간 내에 제출함



안내부서 및 전화번호 (대표전화 02-820-0114)

안내 및 문의	안내부서	전화번호	건물위치	
입학관련 안내	입학처 입학관리팀	02-820-0050~4	신양관 1층	
휴·복학 등 학적 안내	교무처 학사팀	02-820-0151~4 02-828-7401~3		
수강신청 안내				
부전공 안내				
복수전공 안내				
교직이수 안내	교무처 교직원팀	02-828-7405~6		
병사관련 안내	총무처 예비군연대	02-820-0180	미래관 1층	
등록 및 등록금 안내	총무처 재무·회계팀	02-820-0184	신양관 1층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안내	학생처 장학팀	02-820-0167	미래관 1층	
ID카드(학생증) 발급 및 민원안내	학생처 학생서비스팀	02-820-0068~9	학생회관 5층	
Residence Hall(생활관) 입사 안내	Residence Hall 관리운영실	02-2621-0100, 0200,0300,0400	레지던스홀 1층	
장애학생 지원 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	02-820-0060	조만식기념관 1층	
단과대학 및 학과(부)안내	인문대학 사무실	02-820-0303		
	자연과학대학 사무실	02-820-0403		
	법과대학 사무실	02-820-0463		
	사회과학대학 사무실	02-820-0492		
	경제통상대학 사무실	02-820-0543		
	경영대학 사무실	02-820-0543		
	공과대학 사무실	02-820-0603		
	IT대학 사무실	02-820-0932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02-820-0043	
	스포츠학부		02-820-0045	

※ 부서 위치는 부서이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교내건물 배치도



① 베어드홀 (Baird Hall)	⑩ 벤처중소기업센터 (Entrepreneurship & Small Business Center)
② 송덕경상관 (Soongduk Economics & Business Building)	⑪ 진리관 (Veritas Hall)
③ 문화관 (Cultural Hall)	⑫ 조만식기념관 (Jo Mansik Memorial Hall)
④ 안익태기념관 (Ahn Eaktai Conservatory Hall)	⑬ 한국기독교박물관 (The Korean Christian Museum)
⑤ 형남공학관 (Hyungnam Memorial Engineering Building)	⑭ 중앙도서관 (Central Library)
⑥ 교육관 (Education Building)	⑮ 연구관 (Faculty Research Building)
⑦ 백마관 (Baekma Hall)	⑯ 창신관 (Innovation Hall)
⑧ 한경직기념관 (Rev. Han Kyungchik Memorial Hall)	⑰ 글로벌브레인홀 (Global Brain Hall)
⑨ 신양관 (Sinyang Hall)	⑱ 전산관 (Computer Science Building)
	⑳ 미래관 (Vision Hall)
	㉑ 정보과학관 (Information Science Building)
	㉒ 웨스트민스터홀 (Westminster Hall)
	㉓ 학생회관 (Student Union Building)
	㉔ 창의관 (Creativity Hall)
	㉕ 대운동장 (Main Stadium)
A 정문 (Front Gate)	
B 중문 (Middle Gate/Main Parking Entrance)	
C 남문 (South Gate/Parking Entrance)	
D 북문 (North Gate)	
E 조만식기념관 지하주차장진입로 (Parking Entrance)	



교통안내



지하철

지하철 7호선 송실대입구역 ④번 출구
(④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학교 정문입니다)



버스

간선 버스 501, 506, 641, 650, 750, 742, 752, 753
지선 버스 5511, 5517
공항 버스 6019



승용차

용산 방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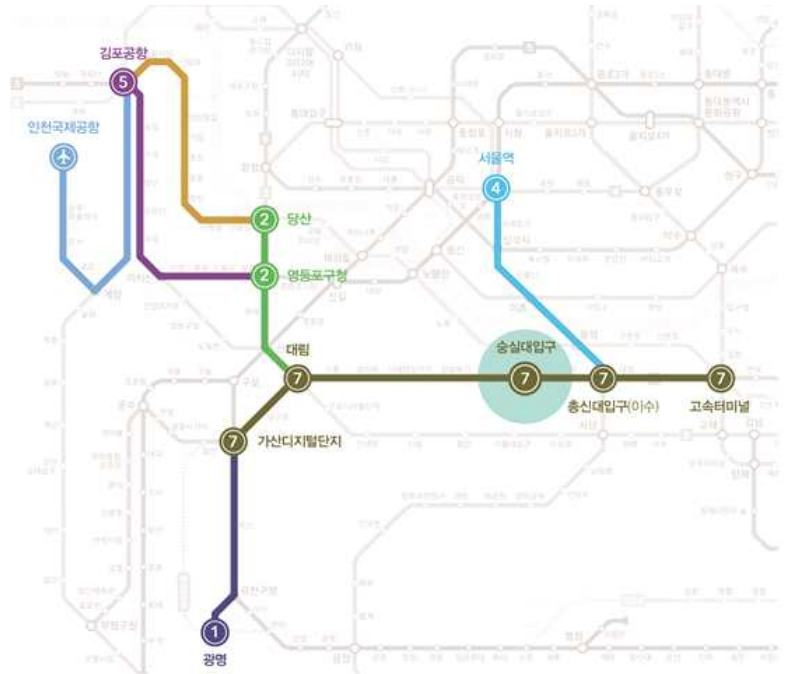
용산 ▶ 한강대교 ▶
상도터널 ▶ 상도사거리에서 좌회전 ▶
송실대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 후 220m 직진 ▶
송실대학교 중문

장승배기 방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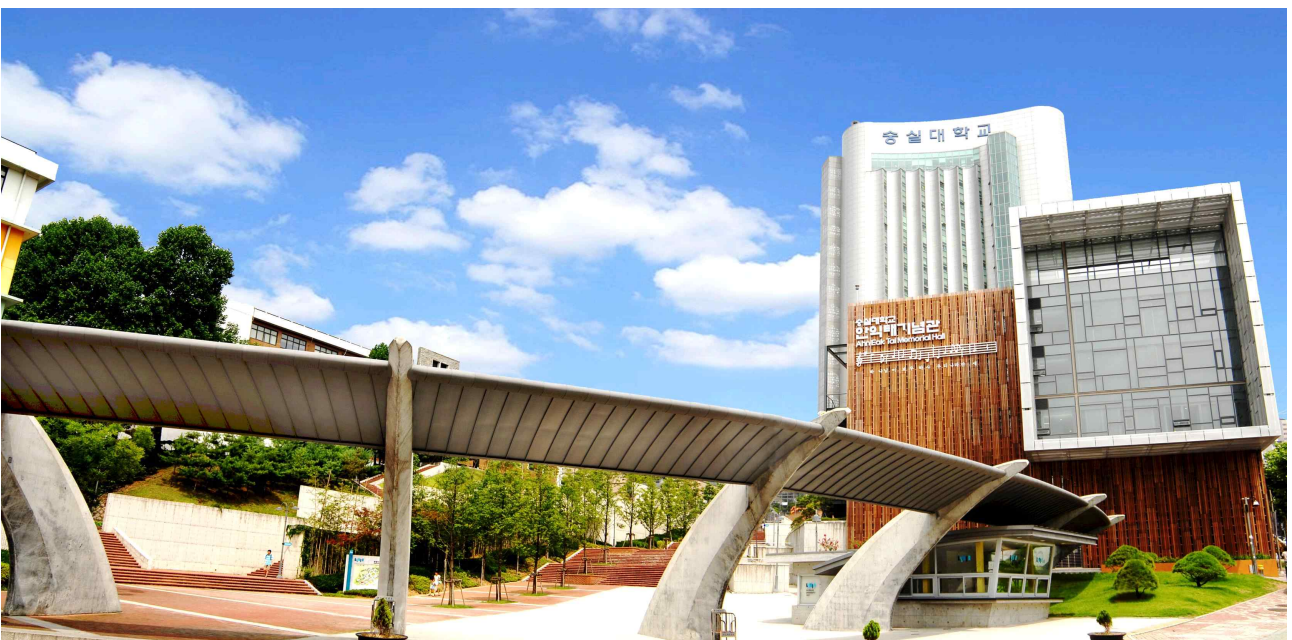
장승배기 ▶ 상도동우체국 ▶
상도동성당 ▶ 상도동사거리 직진 ▶
송실대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 후 220m 직진 ▶
송실대학교 중문

이수사거리 방면

이수사거리 ▶ 남성역 ▶
충신대 ▶ 백운소방파출소 ▶
송실대학교 남문에서 180m 직진 ▶ 송실대학교 중문



송실대학교 정문 전경



【붙임1】

농어촌 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유형 1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6년)을 모두 이수한 자)

모집단위		본교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지원자격 유형 1(6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동안 부·모·학생(본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재학했던 학교 정보			
학교명		학교 주소(정확한 주소 기재)	
중학교		도(시)	시/군 읍(면)
고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 필요한 경우 칸을 나누거나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 확인서는 본 양식 출력-수기 작성, 또는 입력-인쇄 후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함

위 학생은 숭실대학교 2023학년도 편입학 농어촌 학생의 유형1(6년)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출신자 지원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여, 이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_____ 고등학교장

(직인)

숭실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지원자 종합기록표 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자 종합기록표 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자 종합기록표 작성은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조한 후 흑색 볼펜으로 사용하여 바른 글씨로 기재하여야 하며, 원서상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1. **지원구분:** 지원유형에 ✓표로 표기
2. **수험번호, 모집단위**는 인터넷 원서접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3.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호적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기재
4. **자격구분:** 지원자의 해당란에 ○표로 표기
5. **지원학생 기재란**
 - 가. **학교명:** 초등학교부터 최종 재학한 학교까지 순서대로 기재
 - 나. **재학기간:** 재학한 학교의 재학기간 및 재학년수 기재
 - 다. **학교소재지:** 재학한 학교의 국가명 및 도시명 기재
 - 라. **국내 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재학한 학교 과정을 ↔로 표기
 - 마. **총 재학기간:** 총 재학한 기간을 기재
 - 바. **외국학교 재학기간:** 총 재학한 기간 중 외국학교 재학기간만 기재
 - 사. **국내학교 재학기간:** 총 재학한 기간 중 국내학교 재학기간만 기재
 - 아. **교포학생 기재란:** 지원자가 교포일 경우에만 기재
 - 자. **외국인학생 기재란:** 지원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만 기재
6. **부모 기재란**
 - 가. **부, 모 성명**은 호적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기재
 - 나. **외국거주기간:** 외국에 거주한 기간 및 거주 년 수 기재
 - 다. **소재지:** 거주한 외국의 국가명 및 도시명 기재
 - 라. **학생의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부모가 외국에 거주할 당시 학생이 재학한 외국학교 과정을 ↔ 로 표기
 - 마. **교포:** 부모가 교포일 경우에만 기재

【붙임4】 지원자 종합기록표

지원자 종합기록표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국적	영주권 취득일 (교포학생)	시민권 취득일 (외국인학생)
자격구분 선 택	<input type="checkbox"/> 영주교포 자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상사직역 자녀 <input type="checkbox"/>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유치과대학자/교수요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유학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강의 및 연구파견 요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선교파견 요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현지회사 근무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자녀						

■ 지원자 기재란 (재학한 학년 및 학기를 줄글(-)로 표시하세요.)

학교명	재학기간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 학기															
	기간	소재지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년 개월	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 부모 기재란 (학생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교명	외국거주기간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 학기															
	기간	소재지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부(父) 성명 ()	~	년 개월	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교포	영주권번호()	영주권번호()	외국인		국적()	시민권번호()	시민권취득일()	년	월	일								
모(母) 성명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교포	영주권번호()	영주권번호()	외국인		국적()	시민권번호()	시민권취득일()	년	월	일								

20 년 월 일 지원자 : (성명) @

지원자 종합기록표(예시)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국적	영주권 취득일 (교포학생)	시민권 취득일 (외국인학생)
자격구분 선 택	<input type="checkbox"/> 영주교포 자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자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사직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유학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강의 및 연구파견 요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선교파견 요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현지회사 근무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자녀	김승실	021010				

■ 지원자 기재란 (재학한 학년 및 학기를 줄긋기(-)로 표시하세요)

학교명	재학기간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 학기																		
	기간	재학년수	소재지	국가명	도시명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봉천초등학교	2008. 3. 2. ~ 2014. 2. 18.	6년 개월	한국	서울	서울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구암중학교	2014. 3. 2. ~ 2017. 2. 14.	3년 개월	한국	서울	서울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북경한국국제학교	2017. 3. 2. ~ 2019. 2. 20.	2년 개월	중국	베이징	베이징																
서울고등학교	2019. 3. 2. ~ 2022. 2. .	1년 개월	한국	서울	서울																
총 재학기간	12년	개월	외국학교 재학기간	2년	개월	국내학교 재학기간	10년	개월													

■ 부모 기재란 (학생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국외 거주기간을 줄긋기(-)로 표시하세요)

학교명	외국거주기간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 학기																		
	기간	재학년수	소재지	국가명	도시명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부(父) 성명 (김대학)	2017. 2. 14. ~ 2019. 2. 28.	2년 1개월	중국	베이징	베이징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모(母) 성명 (이정보)	2017. 2. 14. ~ 2019. 2. 28.	2년 1개월	중국	베이징	베이징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교포	영주국() 영주권번호()	영주권번호()	외국인	국적()	시민권번호()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교포	영주국() 영주권번호()	영주권번호()	외국인	국적()	시민권번호()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붙임6】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재외국민)

SOONGSIL UNIVERSITY

Sangdo-ro 369, Dongjak-gu, Seoul. 06978, Korea(*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

Tel : +82-2-820-0049

Fax : +82-2-820-0022

e-mail : mjh@ssu.ac.kr

Application Date(제출일자) : * _____

School Name : (영문) * _____

School Address : (영문) * _____

School Phone : * _____, Fax : * _____, E-mail : * _____

Subject : Student Information

To Whom It May Concern :

We are pleased to have (*학생영문이름 _____), a current or former student at your school, applying to study at Soongsil University. Your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ppreciated. Responses will be used only for purposes of this application and will be kept confidential. For your reference, the student's Letter of Consent is below.

If possible, a response from your office by fax will greatly help to expedite our processing of this individual's application.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Sang-Hoon Cho, Ph.D.
Vice President of Admissions
Soongsil University

LETTER OF CONS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Soongsil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23 academic year.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Soongsil University as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Written by applicant (지원자가 기록)	Verified by previously attended school (국외 학교 담당자가 기록)
Date of Birth: * _____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Date of Admission: * _____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Date of Graduation(or transfer if applicable): * _____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Name(영문) and Signature: * _____	Additional Comments: _____
Date(제출일자): * _____	Printed Name and Signature: _____

【붙임7】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재외국민)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

(국외상사직원)

본교수험번호 :

수험생 성명 :

회사명	해외투자 신고서에 기재된 회사명과 동일하게 기재
회사주소 및 연락처 (한국 본사 인사팀)	

재직자 명		재직자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휴대폰번호)	
E-mail			
재직기간	자격인정 재직기간 기재		

재직사실 동의

1. 본인은 이 동의서를 고의적인 허위사실 기재나 대리 작성이 아닌 오직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본인은 송실대학교가 본인의 재직사실을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귀교가 이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재 직 자 성 명 : _____(서명)

송실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8】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

수험번호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

증명종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위임하는 사람 (발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용도	대학 입학	제출처	송실대학교 입학처
----	-------	-----	-----------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 송실대학교 입학처)	성명	송실대학교 입학처 편입학 담당자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신양관 1층 입학처 02-820-0049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신청(조회) 및 수령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유의사항〉

1.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9】 학사학위(4년제) 과정 간호와 지정('12~'22학년도) 전문대학 현황

연번	지정학년도	학교명	연번	지정 학년도	학교명
1	'12학년도	군산간호대학교	44	'14학년도	영진전문대학교
2	'12학년도	경북대학교	45	'14학년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3	'12학년도	원광보건대학교	46	'15학년도	경인여자대학교
4	'12학년도	강릉영동대학교	47	'15학년도	계명문화대학교
5	'12학년도	선린대학교	48	'15학년도	김해대학교
6	'12학년도	조선간호대학교	49	'15학년도	대동대학교
7	'12학년도	경북과학대학교	50	'15학년도	대원대학교
8	'12학년도	전남과학대학교	51	'15학년도	동남보건대학교
9	'12학년도	기독교간호대학교	52	'15학년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0	'12학년도	마산대학교	53	'15학년도	삼육보건대학교
11	'12학년도	광주보건대학교	54	'15학년도	수원여자대학교
12	'12학년도	해전대학교	55	'15학년도	전북과학대학교
13	'12학년도	거제대학교	56	'15학년도	제주관광대학교
14	'12학년도	서영대학교	57	'15학년도	진주보건대학교
15	'12학년도	여주대학교	58	'16학년도	경민대학교
16	'12학년도	가톨릭상지대학교	59	'16학년도	구미대학교
17	'12학년도	호산대학교	60	'16학년도	동주대학교
18	'12학년도	경북보건대학교	61	'16학년도	목포과학대학교
19	'12학년도	대경대학교	62	'16학년도	백석문화대학교
20	'12학년도	대구과학대학교	63	'16학년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1	'12학년도	대구보건대학교	64	'16학년도	부산여자대학교
22	'12학년도	대전보건대학교	65	'16학년도	부천대학교
23	'12학년도	문경대학교	66	'16학년도	서정대학교
24	'12학년도	수원과학대학교	67	'16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25	'12학년도	신성대학교	68	'16학년도	용인송담대학교
26	'12학년도	안동과학대학교	69	'16학년도	인천재능대학교
27	'12학년도	안산대학교	70	'16학년도	전주비전대학교
28	'12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71	'17학년도	강동대학교
29	'12학년도	제주한라대학교	72	'17학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30	'12학년도	청암대학교	73	'17학년도	서일대학교
31	'12학년도	충청대학교	74	'17학년도	창원문성대학교
32	'12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75	'17학년도	포항대학교
33	'13학년도	동강대학교	76	'18학년도	군장대학교
34	'13학년도	동의과학대학교	77	'18학년도	서라벌대학교
35	'13학년도	두원공과대학교	78	'18학년도	송곡대학교
36	'13학년도	수성대학교	79	'18학년도	송호대학교
37	'13학년도	울산과학대학교	80	'18학년도	영남외국어대학
38	'13학년도	춘해보건대학교	81	'18학년도	한영대학
39	'13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82	'19학년도	강원관광대학교
40	'14학년도	경남정보대학교	83	'19학년도	세경대학교
41	'14학년도	경북전문대학교	84	'19학년도	우송정보대학
42	'14학년도	동아보건대학교	85	'22학년도	국제대학교
43	'14학년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전체 총 85개교		

【붙임10】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명단(2022년 기준)

국 가 명	학 교 명
일본(4개교)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중학·고등학교, 오사카금강학교, 건국한국학교
중국(13개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연 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웨이하이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대만(2개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타이베이한국학교
베트남(2개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2개교)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캄보디아	프놈펜한국학교
계	16개국, 34개교

【붙임11】 아포스티유 안내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생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참고〉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21.09.16.기준)

[문의처: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02-2100-7600)]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중동 ·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오만,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붙임12】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 본교 양식

현재 소속 대학에서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증명서 발급부서의 담당자가 (재학, 휴학, 제적) 증명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기관장의 직인을 날인 후 제출

대학명		
소속 학과		
성명		
생년월일		
수료(예정) 학년		
2학년 수료(예정)학점/졸업학점	/	
수료예정일(서류발급예정일)		
관련부서 및 담당자	관련부서:	발급 기관장 직인
	성명:	
	연락처:	
위 학생은 본교 학칙에 의거 2학년 수료(예정)자로 인정함		

※ 현재 소속 대학에서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



송실대학교 입학처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전화 (02)820-0050~3(입학안내)

팩스 (02)820-0022

<http://admission.ssu.ac.kr>



Soongsil University